

## 2022 테마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 정오표(1쇄 기준)

### [1권]

#### p.179 문2 해설② 전체를 삭제하고, 아래 내용으로 교체

② ○ : 검사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조사시각이나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(규칙 제134조의2 참고).

#### p.186

3. ② 체포 전에 피의사실의 요지,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(제200조의 5). 체포영장을 집행함에는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(제200조의 6, 제85조 제1항). ⇨ ② '체포 전에 피의사실의 요지,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(제200조의 5),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(수사준칙 제32조 제1항). 체포영장을 집행함에는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(제200조의 6, 제85조 제1항).'로 수정

#### p.189

문3 해설 ② ○ : 제200조의 5 ⇨ ② × : 체포 전에 피의사실요지, 체포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(제200조의5),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(수사준칙 제32조 제1항).로 수정  
정답 ② ⇨ ① 수정

#### p.192

절차 1.~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, 체포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,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(제200조의 5),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(제200조의 3 제3 항). ⇨ 1. '~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, 체포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,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(제200조의 5),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(수사준칙 제32조 제1항). 뿐만아니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(제200조의 3 제3항).'로 수정

p.205

2. ② 사법경찰관리의 협행법 체포

- ~ 즉,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(제200조의 5). 05. 순경, 10. 순경 2차 · 경찰승진, 14. 순경 2차, 15. 경찰승진, 16. 경찰승진 · 순경 2차 · 7급 국가직 · 경찰간부 ↳ • ‘~ 즉,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(제200조의 5), 05. 순경, 10. 순경 2차 · 경찰승진, 14. 순경 2차, 15. 경찰승진, 16. 경찰승진 · 순경 2차 · 7급 국가직 · 경찰간부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(수사준칙 제32조 제1항).’로 수정

p.228 집행절차 3. 내용 아래에 ▶ 추가

- ▶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(수사준칙 제32조 제1항).